

|      |           |
|------|-----------|
| 등록번호 | 의회사무과 -   |
| 등록일자 | 2025. . . |
| 결재일자 | 2025. . . |
| 공개구분 | 공 개       |

|      |     |         |        |
|------|-----|---------|--------|
| 전문위원 | 간 사 | 의회운영위원장 | 결<br>재 |
|      |     |         |        |

|          |                    |
|----------|--------------------|
| 의안<br>번호 | 제2602호 ~<br>제2604호 |
|----------|--------------------|

|                       |
|-----------------------|
| 2025. 5. 20.(화) 11:00 |
|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심 사 보 고 서

|                                  |
|----------------------------------|
| 안      건                         |
| 총 3건(개정 조례안 1, 개정 규칙안 2) : 붙임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제2602호 ~<br>제2604호 |
|----------|--------------------|

|  |
|--|
| 2025. 5. 20.(화) 11:00<br>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심 사 보 고 서

|                                  |
|----------------------------------|
| 안 건                              |
| 총 3건(개정 조례안 1, 개정 규칙안 2) : 붙임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보고 총괄

##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02호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03호 : 장성군의회 의원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제2604호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II 심 사 경 과

| 의안번호   | 제 출 일        | 제 출 자<br>(발 의 자)     | 회 부 일       | 상 정 일<br>(제2차 운영위) |
|--------|--------------|----------------------|-------------|--------------------|
| 제2602호 | 2025. 4. 15. | 장성군의회 의장<br>(김연수 의원) | 2025. 5. 2. | 2025. 5. 13.       |
| 제2603호 | 2025. 4. 18. | 장성군의회 의장<br>(심민섭 의장) | 2025. 5. 2. | 2025. 5. 13.       |
| 제2604호 | 2025. 4. 18. | 장성군의회 의장<br>(김연수 의원) | 2025. 5. 2. | 2025. 5. 13.       |

## III 심 사 결 과

| 안 건                         | 심사결과 |
|-----------------------------|------|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장성군의회 의원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요구
-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인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 누리집 공개 의무화를 통한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차단 확보

### 【주요내용】

- 정의 및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연구 활동 범위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회의 및 연구활동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연구활동비 집행·관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심민섭 의장)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개선(안 제4조)
-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강화(안 제5조 ~ 안 제8조)
- 사후관리 강화(안 제12조, 안 제15조)
- 비용지출 제한(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출자 : 장성군의회 의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실시간 중계(안 제81조의2)
  - 비공개 대상 외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 공개 시기,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해 임시회의록 공개와 방청 제한에 대한 고지 근거 규정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6. 수정안의 요지 :**

- 임시회의록 공개규정 추가(안 제48조제6항 신설)
- 방청 제한 고지 규정(안 제7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
|----------|---------------------------|
| 의안<br>번호 | 제2605호,<br>제2607호 ~제2616호 |
|----------|---------------------------|

|                       |
|-----------------------|
| 2025. 5. 20.(화) 11:00 |
|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심 사 보 고 서

|  |
|--|
| 안            건                           |
| 총 11건: : 붙임 참조<br>(제정조례안5, 개정조례안4, 계획안2) |



행정자치위원회

# 심 사 보 고 총 괄

##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05호 :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08호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09호 :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0호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07호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의안번호 제2611호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2호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3호 :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4호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5호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의안번호 제2616호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Ⅱ 심 사 경 과

| 의안번호   | 제 출 일        | 제 출 자<br>(발 의 자)    | 회 부 일       | 상 정 일        |
|--------|--------------|---------------------|-------------|--------------|
| 제2605호 | 2025. 4. 15. | 장성군의회의장<br>(차상현 의원) | 2025. 5. 2. | 2025. 5. 13. |
| 제2608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09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0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07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1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2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3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4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5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6호 | 2025. 5. 2.  | 장성군수                | 2025. 5. 2. | 2025. 5. 13. |

### Ⅲ 심 사 결 과

| 안                              | 건 | 심사결과 |
|--------------------------------|---|------|
|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청림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청림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 원안가결 |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차상현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 (안 제4조 ~ 제5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5. 토론요지 : 없음****6. 심사결과 : 원안가결****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성 및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임기 및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군민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3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 및 군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사업시행, 청렴 교육·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이용·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장성군의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5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

(단위: 천원)

| 부서명   | 출연기관            | 2025년 출연금 |           | 변경이유                                    | 관련법령                                  |
|-------|-----------------|-----------|-----------|---|---------------------------------------|
|       |                 | 당초        | 변경        |   |                                       |
| 농산유통과 |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 1,000,000 | 1,200,000 |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직원 추가 채용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변경계획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자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6조제2항제17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7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지원내용(안 제6조)
    - 시체검안비, 운반비,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비용
    - 화장 및 봉안비용
    - 지원한도 :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수 있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고독사 증가 추세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노인회 지원(안 제11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회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 경로식당 등 설치·운영(안 제22조)

-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확대

#### ○ 노인의 날 등 행사(안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조에 따라 “노인의 날”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으로 확대

#### ○ 통합돌봄 사업(안 제24조)

-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양·돌봄생활 유지, 동행서비스 제공 등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지원 관련 내용 추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회 지원, 경로식당 등 설치 운영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군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감면기한 연장 : (현행) 2024. 12. 31. ⇒ (개정) 2027.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5조)
  -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2건(토지 1, 건물 1)

(단위 : m<sup>2</sup>, 천원)

| 유형 | 사업명                            | 소재지              | 면적    | 재산가액      | 비고 |
|----|--------------------------------|------------------|-------|-----------|----|
| 계  | 1개 사업                          |                  | 2,517 | 4,133,615 |    |
| 토지 | 아이행복 돌봄·교육<br>복합 커뮤니티<br>센터 건립 | 삼계면 사창리<br>145-1 | 1,917 | 133,615   |    |
| 건물 |                                |                  | 600   | 4,000,000 |    |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m<sup>2</sup>, 천원)

| 구분 | 필지수 / 동수 | 면적    | 재산가액      | 비고        |
|----|----------|-------|-----------|-----------|
| 계  | 1필지 / 1동 | 2,517 | 4,133,615 |           |
| 취득 | 토지매입     | 1필지   | 1,917     | 133,615   |
|    | 건물신축     | 1동    | 600       | 4,000,000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1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군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 (현행)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개정)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
|------|------------|
| 등록번호 | 의회사무과 -    |
| 등록일자 | 2025. 5. . |
| 결재일자 | 2025. 5. . |
| 공개구분 | 공 개        |

|      |     |         |        |
|------|-----|---------|--------|
| 전문위원 | 간 사 | 산업건설위원장 | 결<br>재 |
|      |     |         |        |

|          |                    |
|----------|--------------------|
| 의안<br>번호 | 제2617호 ~<br>제2618호 |
|----------|--------------------|

|                       |
|-----------------------|
| 2025. 5. 20.(화) 11:00 |
|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심 사 보 고 서

|                                  |
|----------------------------------|
| 안 건                              |
| 총 2건(제정 조례안 1, 개정 조례안 1) : 붙임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제2617호 ~<br>제2618호 |
|----------|--------------------|

|  |
|--|
| 2025. 5. 20.(화) 11:00<br>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2건(제정 조례안 1, 개정 조례안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보고 총괄

##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17호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18호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II 심 사 경 과

| 의안번호   | 제 출 일       | 제 출 자<br>(발 의 자) | 회 부 일       | 상 정 일<br>(제1차 산건위) |
|--------|-------------|------------------|-------------|--------------------|
| 제2617호 | 2025. 5. 2. | 장성군수<br>(재난안전과)  | 2025. 5. 2. | 2025. 5. 13.       |
| 제2618호 | 2025. 5. 2. | 장성군수<br>(산림편백과)  | 2025. 5. 2. | 2025. 5. 13.       |

## III 심 사 결 과

| 안 건                           | 심사결과 |
|-------------------------------|------|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재난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당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변경) - 「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규정(안 제6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조건의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항목 별로 구분 규정(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회부일자 : 2025. 5.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5. 13.(제3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
|--------------|------|
| 의<br>안<br>번호 | 2606 |
|--------------|------|

|                       |
|-----------------------|
| 2025. 5. 20.(화) 11:00 |
|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결과보고서

### I. 심사대상

-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5. 5. 2.
- 제출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25. 5. 12.
- 상정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5. 14. ~ 5. 19.)
  - 실·과소장 질의·답변 및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 의결일자 : 2025. 5. 1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결

### III. 예산안 총괄

- 규모 : 623,549백만원
- 회계별
  - 일반회계 : 615,525백만원
  - 특별회계 : 8,024백만원

## ○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 회계별  |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
|------|---------|---------|--------|
| 합계   | 623,549 | 570,778 | 52,771 |
| 일반회계 | 615,525 | 563,086 | 52,439 |
| 특별회계 | 8,024   | 7,692   | 332    |

## IV. 제안설명 요지

### ○ 생략

##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과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528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조정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재원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성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함.

## **VI.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

- 생략

## **VII.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별첨 자료 참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1. 세 입 : 623,549,306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천원)

| 회 계 별 | 예산 요구액<br>(제출 예산액) | 심 사 결 과 |     |      | 인정액         |
|-------|--------------------|---------|-----|------|-------------|
|       |                    | 삭감액     | 증 액 | 순삭감액 |             |
| 계     | 623,549,306        | 0       | 0   | 0    | 623,549,306 |
| 일반회계  | 615,525,285        | 0       | 0   | 0    | 615,525,285 |
| 특별회계  | 8,024,021          | 0       | 0   | 0    | 8,024,021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2. 세 출 : 623,549,306천원

### 가. 삭 감

- 1) 일반회계 : 292,496천원(붙임 1 삭감조서 참조)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나. 증 액

- 1) 일반회계 : 292,496천원(붙임 1 증액조서 참조)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 회 계 별 | 예산 요구액<br>(제출 예산액) | 심 사 결 과 |        |         | 인정액         |
|-------|--------------------|---------|--------|---------|-------------|
|       |                    | 삭감액     | 증 액    | 순삭감액    |             |
| 계     | 623,549,306        | 292,496 | 20,000 | 272,496 | 623,549,306 |
| 일반회계  | 615,525,285        | 292,496 | 20,000 | 272,496 | 615,525,285 |
| 특별회계  | 8,024,021          | 0       | 0      | 0       | 8,024,021   |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마. 증액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 1**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및 증액조서

### 1. 삭감조서

####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 쪽   | 예산과목   | 사 업 명                | 요구액     | 삭감액            | 인정액     |
|-----|--------|----------------------|---------|----------------|---------|
|     | 계      | 4개사업                 | 672,496 | <b>292,496</b> | 380,000 |
| 182 | 201-03 | 불꽃 라이브 쇼             | 160,000 | <b>80,000</b>  | 80,000  |
| 276 | 401-01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 350,000 | <b>50,000</b>  | 300,000 |
| 311 | 402-02 |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 62,496  | <b>62,496</b>  | 0       |
| 451 | 401-01 |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수선      | 100,000 | <b>100,000</b> | 0       |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

### 2. 증액조서

####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 예산과목   | 사 업 명     | 요구액 | 증액             | 인정액            |
|--------|-----------|-----|----------------|----------------|
|        | 계         |     | <b>292,496</b> | <b>292,496</b> |
| 402-02 | 다목적 소형농기계 | 0   | 20,000         | 20,000         |
| 801-01 | 일반 예비비    | 0   | 272,496        | 272,496        |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